

창원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2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9. 23. 선고 2020가소314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외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발생 경위

원고 차량은 2019. 12. 19. 16:40경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 대천버스정류소(이하 ‘이 사건 정류소’라고 한다) 부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주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감속하였고, 원고 차량 뒤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D심의위원회의 결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피고 차량의 자차보험금 2,89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D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20. 4.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비율이 30:70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6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심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공제금 8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정류소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속도를 줄이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한 피고 차량에 의해 추돌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86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위 8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같은 차선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비교적 어두웠음에도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위치는 이 사건 정류소 진입을 위한 포켓 차선 입구가 아닌 출구 부근이고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차로 오른쪽의 포켓 차선 쪽으로 틀어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이 위 포켓 차선의 입구를 지나친 상태에서 승객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정류소가 아닌 위 포켓 차선의 출구 쪽 공간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차할 수 없는 곳에서 정차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비율은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와 동일한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